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한변협회장후보 소순무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회장후보 소순무입니다.

변호사에게서 인권과 공익에 대한 헌신을 뺄다면, 이는 일반 상인과 다를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의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과 공익을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변협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약자, 소수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권과 공익을 수호하고자 헌신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비단 국내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 국제적이고도 인류 보편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인권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변호사의 활동에 어떠한 외부적인 장애가 있을 시에는 변협이 적극 나서서 대처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인권과 공익을 위해 헌신해 온 귀 단체와 협력하여, 변호사단체의 기본적인 임무인 인권보장과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 단체가 요청한, 아래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1. 현행 변호사법 제97조의 2 제1항은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지방변호사회장 외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징계를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것 외에 법률상 ‘신청권’까지 부여한 것은 변호사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기소되는 경우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개시신청권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권 제도와 개정 논의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대한변호사협회가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인 변호사가 국민으로부터 그 직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단체 스스로 그러한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를 하거나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변호사들로 하여금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정적 취지와는 별개로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까지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제도이고, 더 나아가서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고 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변호사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고유한 방어권과 인권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징계개시 신청권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된다면 그 폐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사실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지방변호사협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고,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그와 관련한 변호사법 및 회칙에 따른 고유한 징계사유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인이 협회장이 된다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징계개시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협회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97조의 5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2항). 한편 협회장이 징계청구를 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신청인인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결국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협회장이나 협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관여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별도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면서, 그 위원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변협 징계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변협이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위원이 5명인데 반하여,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문제는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복수의 징계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특히 이 때 법무부장관의 의도에 따른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징계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스스로를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높은 도덕적 가치의 준수가 요구되지만, 그 위반 여부는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어 변호사단체에 소속된 변호사가 수만명에 이르는 시대에,

변호사 징계에 대한 위와 같은 법무부의 후견적 관여와 감독은 변호사들의 자존심을 심히 해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이며, 변호사 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협회장에 당선될 경우 위와 같은 방향으로의 제도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변호사법 제97조의 4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2014. 10. 31. 접수된 위 징계개시 신청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으며 협회장은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입장으로 법 제97조의 5에서 정한 3개월을 도과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현 집행부 역시 현행 변호사법상 징계절차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3개월의 기간을 스스로 도과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징계권 행사를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속히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하여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리고, 변

호사의 고유한 권리와 역할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징계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변호인의 변호에 관한 권리를 제약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4. 이번에 징계개시가 신청된 회원들 중에는 기소가 안 된 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징계신청 사유를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변호사들의 변호권과 피의자에 대한 조력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징계개시 신청 사유와 범위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명·정직·과태료·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은 경우 그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이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등

으로 인하여 명확할 것이고, 따라서 현행 변호사법상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이 남용될 여지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91조 제1항 제2호 소정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3호 소정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징계사유에 있어서는, 변호사 단체가 그 고유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그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기소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남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현행 변호사법상의 이원적 징계위원회 구조, 그리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판단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비록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단체의 고유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그 신청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겠습니다.